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88

발의연월일: 2021. 3. 15.

발 의 자:이종성・박대수・김용판

김형동 • 윤희숙 • 서일준

김미애 • 이종배 • 정운천

김영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 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「병역법」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 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업무 특성상 장 애인 학대 등의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애인학대 등 신 고의무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특히 지난 1월 대전 소재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건의 경우, 해당 시설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뒤 신고하지 않았다면 학대 사실이 밝혀지기 어려웠을 것임.

이에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추가하려는 것임.

다만,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제도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의무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하도록 하여, 신고에 대한 공익성 확보 및 신고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함(안 제5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90조제3항제3의4호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"종사자"를 "종사자(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)"로한다.

제90조제3항제3의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의4(장애인학대 및 장애인	제59조의4(장애인학대 및 장애인
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	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
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	
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	
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	
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	
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	
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4조	1
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	
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	
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	
<u>종사자</u>	종사자(사회복지시설에서 복
	무하는 「병역법」 제2조제1
	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
	원을 포함한다)
2. ~ 21. (생 략)	2. ~ 21. (현행과 같음)
③ ~ ⑧ (생 략)	③ ~ ⑧ (현행과 같음)
제90조(과태료)	제90조(과태료)
① ~ ② (생 략)	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③
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	
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~ 3의3. (생략)
- 3의4.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 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 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 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하지 아니한 사람

3의5. ~ 7. (생략) ④ ~ ⑤ (생략)

1. ~ 3의3. (현행과 같음)
3의4
<u>다만, 제59</u> 조의
4제2항제1호 중 「병역법」
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
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.
3의5. ~ 7. (현행과 같음)
④ ~ ⑤ (현행과 같음)